

第54回沙下區議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 5 號

釜山廣域市沙下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12月24日(火)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案件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沙下區廳長提出)..... 1 面
 2.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修正案(李相殷議員外9人發議)..... 36 面

(10時07分 開議)

○委員長 孫判岩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沙下區議會 (定期會) 第5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沙下區廳長提出)

○委員長 孫判岩 議事日程 第1項 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本豫算案은 1996年12月20日 第4次 本會議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鎮文 1996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사항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提案理由와 주요내용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 제안이유

- 세입예산은 '96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세입의 가감 정리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
-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정리와 계획변경 등에 의한 사업예산조정 등을 위해 '96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추가경정예산안규모 및 특징)

가. 세입·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2회추경	증감율
계			80,317,228	93,285,179	△12,967,951	△13.9%
일 반 회 계			71,022,359	70,586,294	436,065	0.6
특 별 회 계			9,294,869	22,698,885	△13,404,016	△59.1
	의 료 보 호 기 금		3,193,440	3,876,606	△683,166	△17.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47,795	547,795	—	—
	주 차 장		4,428,511	4,304,511	124,000	2.9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554,756	554,756	—	—
	장 립 유 수 지 이 설 사 업		520,150	13,365,000	△12,844,850	△96.1
	발 전 소 주 변 지 원 사 업		50,217	50,217	—	—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구 성 비		구 성 비		2회 추경	증감율
계		71,022,359	100%	70,586,294	100%	436,065	0.6%
지 방 세		19,360,531	27.3	18,635,000	26.4	725,531	3.9
세 외 수 입		21,075,321	29.7	22,377,928	31.7	△1,302,607	△5.8
	경 상 적 세 외	9,053,649	12.8	9,257,536	13.1	△203,887	△2.2
	임 시 적 세 외	12,021,672	16.9	13,120,392	18.6	△1,098,720	△8.4
조 정 교 부 금		16,943,000	23.8	16,943,000	24.0	—	—
보 조 금		13,643,507	19.2	12,630,366	17.9	1,013,141	8.0
	국 고 보 조 금	5,532,691	7.8	5,928,087	8.4	△395,396	△6.7
	시 비 보 조 금	8,110,816	11.4	6,702,279	9.5	1,408,537	21.0

□ 주요증감 내용

○ 일반회계

- 지 방 세 725,531천원증
재산세 70,824 종합토지세 465,707 사업소세 170,000 과년도 19,000증
- 세 외 수 입 △1,302,607천원
수입수수료 수입 △284,588 징수교부금 △ 39,299 이자수입 증 120,000
재산매각수입 △610,800 부담금 △133,600 잡수입 △138,270
과년도 수입 △216,050
- 국 · 시비보조금 1,013,141천원증
국고보조금 △395,396 시비보조금 1,408,537 증

○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683,166천원
국고보조금 △540,854 시비보조금 △142,312
- 주 차 장 124,000천원증
사업수입 10,000 사업외 수입 114,000
- 장립유수지 이설사업 △12,844,850천원
사업수입(매각수입) △13,000,000 사업외 수입(잡수입) 155,150 증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2회 추경	증감율
계	71,022,359	100%	70,586,294	100%	436,065	0.6%
일 반 행 정 비	22,606,559	31.8	23,403,939	33.2	△797,380	△3.4
사 회 개 발 비	27,397,830	38.6	28,597,552	40.5	△1,199,722	△4.2
경 제 개 발 비	18,859,845	26.6	16,402,619	23.2	2,457,226	15
민 방 위 비	285,829	0.4	282,729	0.4	3,100	1.1
지원및기타경비	1,872,296	2.6	1,899,455	2.7	△27,159	△1.4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총 계	△13,404,016	△13,404,016
의 료 보 호 기 금	국고보조금 △540,854 시비보조금 △142,312 소 계 △683,166	진료기관지정서등 인쇄일반수용비△653 의료보호심의위원회수당 △200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674,813 의료보호2종대상자 진료비대불 △7,500
주 차 장	공영주차장위탁관리사용료수입 10,000 압류해제비 수입 14,000 과년도 수입 100,000 소 계 124,000	주차단속원 인건비 516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공익근무요원봉급) 주차단속원 일반업무추진비 440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주차단속원 복리후생비 1,027 주차차위반과태료수납우편료 △10,000 공익근무요원보상 △4,816 예비비 136,833
장 립 유 수 지 이 설 사 업	택지매각수입 △13,000,000 민자투자자선수입 149,912 공공예금이자수입 1,048 한국전력환불금 4,190 소 계 △12,844,850	투자비 상환 △12,830,000 예 비 비 △14,850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경 없음

□ 주요증감내용

○ 일반회계

- 경상예산 △1,073,464천원
 - 필 수 경 비 : 인건비 △724,279 기준경비 △103,202 관서운영 3,220 증
 - 경상적경비 : △249,203
- 사업예산 1,536,688천원증
 - 국고보조경상적 사업 △448,574 국고보조 투자적 사업 110,140 증

시도비 보조사업	1,471,229	자체 신규사업	403,893
• 예비비 등			△27,159천원
• 명시이월비			5,528,394천원

구평동 ~ 장림동간 산복도로 개설 등 9건

○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등	△683,166천원
• 주 차 장 : 주·정차위반과태료 수납우편료, 예비비 등	124,000천원증
• 장림유수지이설사업 : 장림유수지 이설사업투자비상환 등	△12,830,000천원
• 명시이월비 :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매입 등 3건	4,138,111천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04億 3,585萬 2,000원,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05億 8,650萬 7,000원으로 구성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10億 2,235萬 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億 3,606萬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국·시비보조금을 중앙부처 및 시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과정3동사 주변도로 개설과 감천천마산산복도로개설을 위해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편성한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라 하겠으나 세외수입중 기정예산에 관공업 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을 과소책정한 것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을 과다 책정하여 금회 추경에 경정한 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에 의한 결과로 생각되며, 특히 구 과정3동사 매각수입을 기존예산에 책정하였으나 매각치 못하여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은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기존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326億 667萬 5,000원, 국·시비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344億 1,337萬 9,000원, 채무상환 23億 8,050萬원, 예비비 등이 16億 2,180萬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이 일부 가감됨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차원에 서 예산을 정리한 것등은 예산의 경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기정예산 16億 3,400萬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계획의 변경이나 폐지에 의한 사항으로서 계획을 잘못하여 재원을 사장시켜 필요사업을 적기 시행치 못하게 한 결과를 발생케한 사항으로 생각되며, 특정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나 순수 구비로 시행할 일부 투자사업을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회계연도 폐쇄기가 임박한 시점인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 예산운영이라 보기 어려우며, 당해연도에 시행치 못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비가 9건에 55億 2,839萬 4,000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특